


특허청


특허청

**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,
기업성장 견인**



70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	과 장 김지수	042-481-8321
	특허심사제도과	사무관 윤기웅	042-481-5397
		2015년 7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28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특허출원에 ‘심사중’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

- 공지에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‘심사중’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앞으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‘특허출원(심사중)’으로 표시해야 한다. 지금까지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마치 특허등록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.

아울러, ‘공지에외주장’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.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에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에외주장을 못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.

또한,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‘분할출원’을 할 수 있게 하여 시장 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게 되었다.

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국민의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.”라고 하면서, “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

붙임 : 사례 및 공지예외 주장 제도

[붙임] 사례 및 공지에외 주장 제도

(사례)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‘특허 제10-△△△△-○○○○○○○○호’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.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.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. 특허를 받았다면 ‘특허 제10-○○○○○○○○’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.

공지에외주장 제도: 발명을 먼저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나, 출원하면서 공지에외주장을 하면 특허 획득 가능

분할출원: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하여 별개로 출원 가능